

[별 표]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기준

□ 기본요건

1.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외의 시·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업종을 영위할 것
2. 본사 및 사업장이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*일 것. 이 경우 협업계약에 따른 협력업체 또는 기관이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
 - *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3. 중소기업(시·도지사 관할구역 외의 중소기업을 포함한다), 중견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과 협업계약에 따른 협업체를 구성할 것
 - * 비고: 협업체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.
4. 상시근로자 10명 이상

□ 평가지표

실적지표	주요내용
지역별 자체 지표 (30점)	▶지자체별 자체 방침에 따라 선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
협업계획 평가 (40점)	▶제시한 협업사업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협업사업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의 - ①R&D중심형 ②생산중심형 ③마케팅중심형 ④지식서비스중심형 중 택 1하여 협업계획을 유형화하여 제시
선도기업 혁신성장역량 (30점)	▶(혁신역량) 지역별 스타기업 평균 대비 우수한 R&D 역량 보유여부(최대 15점)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년간 매출대비 R&D 투자비율 연평균 증가율(5): 지역평균이하 0점 ~ 1%p 증가시 2점 ▶ 3년간 R&D 개발인력(5): 지역평균이하 0점 ~ 1%p 증가시 2점 ▶ 3년누적 특허등록수(5): 지역평균이하 2점, 1개 증가시 1점(해외특허는 2점) </div> ▶(성장역량) 지역별 스타기업 평균 대비 우수한 성장 역량 보유여부 (최대 15점)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년 평균 고용증가율(5): 지역평균이하 0점 ~ 1%p 증가시 1점 ▶ 5년 평균 매출 성장률(CAGR)(5): 지역평균이하 0점 ~ 2%p 증가시 1점 ▶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(5): 지역평균이하 0점 ~ 2%p 증가시 1점 </div>